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12156호(2024.2.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33-14 외 11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37층 2개동 총 168세대 중 일반공급 78세대
[특별공급 90세대(일반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25세대, 신혼부부 30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 세대)

Table with columns: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대지비, 총공급세대수, 기간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우선배정세대수

Table with columns: 구분, 약식표기, 동호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금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대지비포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금금액을 상조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각동의 15층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됩니다.

- I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 III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IV 청약자격
■ 청약자격
1.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Table with columns: 구분, 내용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지속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 국외 거주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태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신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대상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대상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지역을 갈매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일이 기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 IV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 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01-2077-4722-06 우리자산신탁(주)

- V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공금금액, 계약금(10%), 잔금(90%)
(2)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약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VI 추가 선택 옵션(확장시 유상 선택 옵션)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약식표기, 구분, 설치위치, 공금금액,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비고

- (2) 추가 옵션 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약식표기, 공금금액,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 (3) 추가 선택 옵션 납부계약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VI 기타 사항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비고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 VII 현장 및 견본주택 안내
■ 견본주택 위치 및 문의전화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224-16, ☎ 문의전화 052-276-6800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sinjeong.thepole.co.kr

